

제31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충청남도의회사무처****일 시** 2020년3월19일(목) 10시**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의사일정**

1.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3.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5.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조철기·장승재 의원 발의) 2면
2.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한태·김연·여운영·김옥수·황영란·정병기·김기영·최훈·김은나·김석곤·오인철·김영수·홍기후 의원 발의) 4면
3.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홍재표·한영신·전익현·장승재·김동일·조철기·홍기후·김은나·양금봉·김대영·정병기·이계양 의원 발의) 6면
4.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장승재·이공희 의원 발의) 11면
5.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여운영·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기영·한영신·김은나·김명숙·양금봉 의원 발의) 11면
6.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김기영·정병기·여운영·최훈·황영란·양금봉·안장현 의원 발의)	11면
7.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정병기·최훈·김옥수·여운영·황영란·김기영·정광섭·한영신 의원 발의)	11면
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한영신·조승만·양금봉·김명숙 의원 발의)	11면
9.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역에서 뛰고 계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본래의 업무에 대해서, 긴급돌봄사업도 거기다 코로나19 대응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이 좀 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민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7건 및 출연계획안 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조철기·장승재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 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께서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광희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심사를 위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면서 본연의 업무도 누수 없이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한태·김연·여운영·김옥수·황영란·정병기·김기영·최훈·김은나·김석곤·오인철·김영수·홍기후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부위원장님 등 열네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개인적·의료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여러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로서 충남도가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하여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 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정구 실장님에게 하실 것인지 이종화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이정구 실장님께 여쭙게

요.

이것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가입하는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세계건강도시연맹이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고요, 조례의 제정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각 지자체가 거기에 가입을 하고 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가입이 되고, 가입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조례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입을 하면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건강도시로 가입되었다 정도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혜택이라는 것보다는 “전 세계의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 구성원들의 삶이, 몸과 마음과 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선언적인 모임이에요, 건강도시협회라는 회의체가.

그래서 이 의미는 도시설계를 하거나 환경계획을 하거나 의료, 건강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종화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어제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예고에 대해 건의문이 들어왔어요.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이거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종화 의원이 좀 아시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제가 건의안을 보고 그 분이 여기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님이셔서 찾아뵙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한 내용은 이 조례하고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 추가하는 부분, 또 여기 내포신도시에 건강도시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바꾼다든지 꼭 여기에다 추가로 삽입을 안 해도 규칙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해서 만나보고 상의는 했는데 특별하게 조례를 바꾸고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실장님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추가로 삽입할 게 있는지 또 사업방향이나 그런 것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건의문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조무성 교수라는 고대 명예교수인데 저는 이전에 여러 번 만나봤었어요.

처음에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 전체의 컨셉이나 앞으로의 방향, 도시의 이념 지향성 이런 것들을 건강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셨고 또 전에 행정부지사님 방에서 만나면서 —저를 불러서— 같이 여러 번 만나서 저는 내포신도시개발과하고 여러 관련 과 과장들로 하여금 이게 좋은 컨셉인데 TF를

한번 논의하자, 어떤 도시계획의 방향성이다, 해서 내용은 -저는 건의문은 보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얘기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기본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기영 위원**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건의문까지 왔고, 그 교수님은 사실 본 위원도 몇 번 만났어요.

직접 사무실도 가서 찾아뵙고 말씀 듣고 했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점을 긴밀하게 협의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수시로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

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 퇴장)

(지정근 의원 입장)

3.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홍재표·한영신·전익현·장승재·김동일·조철기·홍기후·김은나·양금봉·김대영·정병기·이계양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홍재표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례에 관한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정비와 예산반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정구 실장님에게 하실 것인지 지정근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이정구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보고에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방

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안을 봐도 지원 신청이 간략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거로 계시던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출산보장복지실장 이정구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이 빈곤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무연고자에 대한 장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항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보면 이 장제에 관련된 것이 법에 시장·군수의 사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확대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여하튼 향후에 도에서는 이 권한 자체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세부적인 절차나 기준을 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의 이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시군이 하되 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넓은 근거규정을 만들고, 세부적인 것은 시군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신 겁니까?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11조에 보면 비용환수가 있는데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어떤 경우가 부정한 방

법이 있을 수 있죠?

○**저출산보전복지실장 이정구** 처음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거를 신청했을 수도 있고요.

○**최 훈 위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보호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데 무연고자가 가족이 있을 수 있나요?

○**저출산보전복지실장 이정구** 이 기본 조례에는 무연고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을 정해야 되겠지만 차상위계층 중에 자녀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 훈 위원**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이 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가 충분히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신청이 아예 안 되는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출산보전복지실장 이정구**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그 관련법에 의한 분들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굉장히 쉬웠죠.

그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차상위계층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것 관련된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런 절차나 준칙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김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절차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장제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시군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세부적인 절차 기준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요…….

○**최 훈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분이 사실은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런데 이 내용이 있길래.

그래서 신청 자체를 아예 시군에서 받을 텐데 도에서 이거를 거를 장치가 현실적으로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전복지실장 이정구** 저는 이 실무책임자로서 이 조례는 일단 안정적으로 저소득층, 무연고자에 대한 장제에 관련해서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또 시군에서 그 사무를 가지고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대리, 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세부적인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까지는 도에서 관여가 되고 역할을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 절차를 잡는 것은 도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 된다면—시군에서 물론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집행하는 데 좀 더 주의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전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질의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께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러 여기에 오셨는데 -저희 상임위 소속 건인데- 발의자가 보니까 저희 상임위 중에서는 정병기 위원 한 분이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타 상임위 것 조례를 발의하려면 그쪽 상임위 쪽에 가서 먼저 위원장님 이하 각각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공동발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정병기 위원님 한 분이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셨나…….

지정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내웃음)

○**지정근 의원** 예,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당연히 이해를 하고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 이게 워낙, 지난 317회 때 상정됐어야 되는데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회기로 넘어왔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회기 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모임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이셨던 분에 한해서 이렇게 공동발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 깊게 신경쓰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 연** 예,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 위원** 여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지원 여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되어 있는 장사업무의 위임 등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 연** 위원님 여러분!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검토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이 있

었으므로 여운영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여운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의 운영원칙을 준수하고 관련법규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포함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삭제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업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이므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일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조항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해서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운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출산보 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5건을 일괄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장승재·이공휘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여운영·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기영·한영신·김은나·김명숙 양금봉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김기영·정병기·여운영·최훈·황영란·양금봉·안장현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정병기·최훈·김옥수·여운영·황영란·김기영·정광섭·한영신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한영신·조승만·양금봉·김명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

신 김옥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부록 12. 제안설명(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울러 두 건 조례안의 제·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부록 14.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아울러 두 건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8.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 위원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한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황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부록 22. 검토보고(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3.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4.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부록 25. 검토보고(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5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 **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이정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마지막,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좀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걸 보면 어떤 위원회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빠져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기존 조례보다 역행한 것 같고, 사업들만 편성한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견제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버렸어요.

(의사직원 설명)

지금 기존 거하고 신규 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번 개정된 거에.

여기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견제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기구 자체가

다 빠져 버렸습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그 비교표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영란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정병기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 **황영란 위원** 그 위원회가 센터안의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센터에서 굳이 조례에 담지 않는 게 맞다라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삭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정병기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알아서 규정을 만들라는 것은 조례에…….

○ **황영란 위원** 이게 지침상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서.

○ **정병기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지침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조례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지침대로 하면 되지 조례를 왜 만듭니까?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존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여건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이 내용들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침이라든가 법률의 규정하에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 만드는 것 보니까 다, 당연히 지침이 있고 법령에 나와 있어도 조례에 들어갈 내용들은 들어가 줘야죠.

답변 좀…….

○ **위원장 김 연**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지금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센터 운영을 한

다는 것은 그 센터 운영을 하면서 지침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부조례개정안인데 우리 도 차원의 위원회 규정이 전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서 답을 못 드리는데, 제가 한번 과장의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것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기존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걸 개정하면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다 빠졌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과정에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정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의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재정부담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은 50억 정도가 됩니다.

이건 도비 50%, 시군비 50% 소요가 예상되나 산후조리원의 설치에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 국비지원 건의 등 도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전체 귀국 주민의 평균 20%인 50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 중이며, 왕복항공료는 기준가가 80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총 4000만 원의 비용이 됩니다.

귀국 주민 역방문 수가 사할린 외 지역을 포함하면 175명 정도가 되고,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 수가 2019년 245명에서 2020년 231명으로 평균 나이가 78.5세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방문지역을 확대하여도 연차별로 계획을 한다면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관련입니다.

65세 이상 도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는 향후 5년간 84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년 1680명에게 5년 내에 보행기 지원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도비 7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주거지원 등 매년 2억~3억 정도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반영된 자립정착금 지원,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운영시 LH사회공헌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같

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의 재정부담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51분)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6. 제안설명(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가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를 매칭 반영한 것으로 기존 복지재단의 기능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7.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

연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8. 검토보고(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실장님!

먼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연금은 시설 설치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14억 5120만 원은 충남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에 관련된 운영예산입니다.

국비 9억 7560만 원, 67%가 되겠고요, 도비는 4억 7560만 원,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 설치비는 5억 원인데 본부 시설임대비가 1억 원, 종합재가센터 2개소의 설치 및 임대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의 신규인력 9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입니다.

충남복지재단 직원 보수규정 기준으로 2억 4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운영비가 공공요금, 교육훈련비, 자산취득비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민간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 홍보와 광고비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서비스원 관련 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해야 될 목들을 다 정해서 내려온 거죠?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유형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병기 위원** 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 5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유형별로?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는 필수로 해야 되고 또 요양시설 2개인가 이것도 필수로 해야 되고.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중앙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된 직영운영의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기타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사업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 **정병기 위원** 이거 딱 지정을 해 놔

데요, 실장님!

이거는 한번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항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지금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왜 받아야 될 이유가 없냐면요, 사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취지 자체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아니고 잘 돌아가는 걸 지금 손을 대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돼가지고 해줘야 될 역할이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별로 그렇게…… 이미 다 잘 돌아가고 있는 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들도 사실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문제지, 오히려 민간영역이 문제지 국공립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고, 요양원 설치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런 데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충남도에 맞게끔 사실상 못 하는 것은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충남만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충남도에서 운영을 해주셔야지, 복지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의미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정말 우리 충남도에 맞는 별도의 모델을 찾아가

지고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그동안에 김연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말씀도 주셨고, 사실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저희는 금년에 할 생각이 없고 늦추려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지역 복지에 관련된 정책 연구·조사, 지역에 맞는 모델 개발하기도 지금 바쁘고 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하고 마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것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먼저 지역의 모델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동안 해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복지재단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조건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하려고 그동안 십수 년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국가의 정책과제고 국정과제라고 단서를 붙이니 “좋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참여를 하되 당장은 안 되고 하겠다”라고 금년도에 일단은 공모를 신청했고 받은 겁니다.

정부가 정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요청도 계속 해왔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정부가 요구한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24시간 돌봄 체제 같은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 또 장애인에 대한 민간 분야에서 하지 못하는,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 24시간 돌봄, 또 향후에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 또 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치유센터에 관련된 것, 힐링센터에 관련된 것, 타 지역이 하지 못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공백을 메꾸어주는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재단 설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건부로 했던 거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단의 운영을 최소화하되 만들어지고 나서는 저희 주장을 계속 강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충남의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병기 위원** 강력하게 좀 하셔가지고요, 충남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복지사각지대 이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꼭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될 이유는 없고 가장 시급한 게 복지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장님이 강하게 항의하셔서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관련해서요, 실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선 우리가 ‘발굴’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발굴’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래서 24시간 어린이집 당연히 도립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지금.

민간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늘 얘기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자립센터가 되든 아니면 발달장애인들 보호센터가 되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명칭은 있겠지만 일반 우리 민간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유형에 있는 것들을 도립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누구 허락사항도 아니고 다른 시군 누군가가 하고 그걸 우리가 위탁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일 추진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지역사회서비스원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로써 사업체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 내용을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 내용들을 채워 넣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자꾸 국공립시설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변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야 형식적으로 맞춰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실리는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대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

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 연 김옥수 김기영 김한태
여운영 정병기 최 훈 황영란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이종화 지정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조광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실장 이정구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명완호

장애인복지과장 이언우

보건정책과장 백현옥

건강증진식품과장 김재형